

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

< 2022.2.15.(화)부터 시행 >

구분	내용
마스크 종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넥워머*·바라클라바**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불인정 (과태료 부과 대상) * 넥워머: 목을 따뜻하게 하려고 두르는 의류 ** 바라클라바: 머리·목·얼굴을 거의 다 덮는 방한모 형태 • 3밀시설 등 보건용 마스크(KF94·KF80) 우선 권장
마스크 착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마스크 가드 등 밀착력을 떨어뜨리는 액세서리 사용 자제 권고
관리자·운영자 과태료 부과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(1차 위반) 50만원 → (2차 위반) 100만원 → (3차 이상 위반) 200만원

상황별 과태료 부과(예시) * 1차 위반 시

위반 내용	행정명령	운영자 (또는 관리자)	이용자	시설예시
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·관리 소홀	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(제2호의4)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 명령(제2호의2)	과태료 50만원	과태료 10만원	카페
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·관리 적합	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(제2호의4)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 명령(제2호의2)	과태료 부과 없음	과태료 10만원	PC방
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	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(제2호의4)	-	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자 과태료 10만원	상점
관리자·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관리자 운영·관리 소홀	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(제2호의4) 해당 장소 방역수칙 준수 명령(제2호의2)	과태료 50만원	관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	공연장
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	운송수단 방역수칙 준수 명령(제2호의3)	-	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	대중교통